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24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윤성옥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15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과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를

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 등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에 임산물,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(이하 “위탁신청서”라 한다)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“연구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(이하 “연구소라 한다)에 의뢰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
| <p>제2조(시험 및 감정위탁 등) ① 연구소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위탁자라 한다)는 이 조례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“연구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2조(시험 및 감정위탁 등) ①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에 임산물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호서식(이하 “위탁신청서”라 한다)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“연구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3조(수탁의 거부) ①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서의 검토결과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3조(수탁의 거부)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(시험성적서) ① 연구소장은 임업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성적서 교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뢰인이외의 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5조(시험성적서)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 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7조(공시종자의 봉합) ① (생략)</p> <p>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7조(공시종자의 봉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.</p> |

[별지 제1호서식]

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업에 관한 | · 실내 | · 시험 | 위탁신청서 | 처 리 기 간 | |
| | | · 분석 | | 시 험 | 100일 |
| | · 현지 | · 조사 | | 분 석 | 25일 |
| | | · 감정 | | 조 사 | 15일 |
| | | | | 감 정 | 30일 |
| 신 청 인 (법인은 대표자성명) | ①성 명 | | ② 주민등록 번호 | | |
| | ③주 소 | | | | |
| 위 탁 내 용 | ④ 공시품명 또는 조 사 사 항 | | | | |
| | ⑤ 수 량 또 는 조 사 면 적 | | | | |
| | ⑥ 생산지(제조지) 또는 조사지역 | | | | |
| | ⑦채 취 연 월 일 | | ⑧채 취 방법 | | |
| | ⑨위 탁 사 항 | | ⑩봉 함 | 유· 무· | |
| | ⑪목 적 | | | | |
| <p>충청북도 입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·무인)</p> <p>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</p> | | | | | |
| <p>○ 구비서류 : 입야도(1:6,000) 1부(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)</p> <p>○ 공 시 품 : 충청북도입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</p> | | | | | <p>수수료</p> <p>산림청고시 참 조</p> |

[별지 제2호서식]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발급번호 제 호 | | | |
| 임업에 관한 | | · 시험 · 분석 · 조사 · 감정 | |
| 성적서 | | | |
| 신청인 | ① 성 명 | | ② 주민등록번호 |
| | ③ 주 소 | | |
| 결과내용 | ④ 공시 품명 또는 조사 사항 | | |
| | ⑤ 수량 또는 조사면적 | | |
| | ⑥ 생산지(제조지) 또는 조사지역 | | |
| | ⑦ 채취연월일 | | |
| | ⑧ 내 용 | | |
| | ⑨ 방 법 | | |
| | ⑩ 성 적 | | |
| <p>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()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</p> | | | |

[별지 제3호서식]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업에 관한 · 시험 · 분석 · 조사 · 감정 성적서 교부신청서 | | | 처 리 기 간 즉 시 |
| 신 청 인 | ① 성 명 | | ② 주민등록번호 |
| | ③ 주 소 | | |
| 신 청 내 용 | ④ 공시품명 또는 조 사 사 항 | | |
| | ⑤ 성적발급번호 | | |
| | ⑥ 사 용 목 적 | | |
| | ⑦ 소 요 량 | 국문 | 통 |
| 충청북도 입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()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날인·무인)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 | | | |
| 구비서류 : 의뢰인의 동의서 1부(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) | | | 수수료 산림청고시 참 조 |

관 계 법 령 발 취

·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